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		일 시	2018.1.8.(월) 14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이호선, 김인준, 이승현, 김남균, 원윤성 (이상 6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	
불참위원	김태호 위원		
의 제	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를 안건으로 함.

2.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생 측의 외부 전문가 위원 추천 관련 규정 등에 명문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등심위 회의록에 명시한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규정에 명문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현재 등심위 규정에 학생 측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

않음에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학교 측에서 추천해왔음. 이러한 상황에서 규정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차후에 학생 측의 추천이 어려울 수도 있음.

- 그러한 우려에서 안정적인 등심위 운영을 위해 규정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생 측에서도 외부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등심위 회의를 통해 동의하였고 회의록에도 기록이 있으므로 학생 측에서 추천을 하고자 할 때 이를 막을 수는 없음.
- 이와 같은 사항을 학교 측과 학생 측에서 각각 차기 등심위 위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회의록을 통해 상호 신뢰 속에서 진행하면 좋겠으나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음.
- 학생 측이 외부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는 창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며 지금 회의에서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등심위에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자는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심위 규정 때문에 학생 측이 외부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현재 규정에 따라 학생 측도 추천할 수 있음을 등심위 회의에서 결정한 것임.
- 등심위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모두 규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결정 사항의 진행이 가능함. 아울러 회의록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므로 차후에 등심위 구성원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회의록이 규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는 없으며 그동안 학생 측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천한 적이 없으므로 규정에 명문화 유무가 큰 의미를 지님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심위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정해져 있음. 등심위 규정을 보면 등심위의 기능을 적정 등록금 산정 및 심의, 예·결산 심사·의결, 기타 등록금 산정과 관련한 심의 사항의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본격적인 등록금 심의 전에 보다 공평한 등심위 구성에 대한 안정적인 절차가 마

련되어 있을 때 등록금 산정도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현재 규정의 문제로 학생 측이 추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규정을 개정해야만 학생 측의 추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 기회를 보장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향후 실무적으로 학생처를 통해 진행하면 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등심위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등심위 구성에 형평성을 담보하자는 것임.
- 학생 측 간사의 배석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그동안 등심위 위원 구성이 불공평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생 측과 합의하여 결정해온 것임. 전임 학생 측 대표들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간사는 학교 측과 학생 측 모두의 간사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교의 직원이므로 구성에 불공평한 측면이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심위에서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할 때 간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 유리하게 발언하는 것도 아님.
- 간사는 등심위 안건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역량이 있음. 학생 측 간사가 그러한 역할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생 측은 학교 직원인 간사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난주에 요청한 자료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학생 간사를 두면 학생 측에서 보다 용이하게 학교 측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과 논의 진행에 더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 대표의 일원으로 참여했어야 함.
- 지난 회의에서 자료는 찾아본 후 없는 것에 대해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7학년도 추경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없었으므로 요청한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전임 학교 측 대표에 이미 전달한 자료인데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으면 다시 받으면 됨. 학교 측에서 일부러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님.
- 아울러 학생 측에서는 자료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학교로부터 자료를 인수받을 때는 확인서를 남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■ 위원장

- 자료를 받을 때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기 종료 후 반납하는 것으로 함.
-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학생 측 의견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외부 전문가 추천과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논의할 것이며,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준비할 수 없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제시한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해 설명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사 확충 관련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진행 상황에 변화는 없으며 본예산을 책정하는 1월 말까지는 결정되어야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만약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을 할 경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건축기금 적립금을 활용할 계획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자산 지출에 적립금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도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학생 경비, 실험실습비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에 적립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적립금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단기 운영비 총당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투입하면 장기적인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짐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금액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등록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재정에 총당이 가능할 것임.
-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됨.
- 등록금 책정(안) 자료를 보면 부족한 재정을 학생 등록금으로만 총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에 대한 책임은 언급되지 않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적립금 이자는 이미 비등록금회계 수입에 포함되어 학교 예산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음.
- 재정적인 문제를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등심위 회의를 진행하는 것임.
- 법인은 학교로부터 이익을 가져갈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전입금을 내야하는 상황임. 현재 법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타 대학 법인과 비교해서도 매우 양호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에서 법정부담금 전액을 전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인의 노력과 비교하면 학생들은 생존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있음.
- 학교 측에서 작성한 등록금 책정(안)은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한 자료로 보이며 법인의 책임이나 기부금 모금, 연구 사업 수주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은 없고 비용 상승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측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학생 측과 논의하고자 함.
-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.
- 등록금 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증가폭이 크지 않은 상황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자금 대출로 파산하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학우들에게는 부담 완화 효과가 큼.
- 장학금을 확충하는 노력보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혜택이며 그러한 노력이 우리 대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.

■ **학교 측 대표위원**

- 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모두 같지 않으므로 모든 학생에게 소액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함.
-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음에도 대학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함.

■ **학생 측 대표위원**

- 대학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법인에서도 부담해야하며 등록금 수입의 증대를 통해서만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.

■ **학교 측 대표위원**

- 등록금 동결 시 우리 대학보다 이미 높은 수준을 받고 있었던 대학과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. 등록금이 싼 대학으로 알려지기 보다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, 동문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병행해야함.

■ **위원장**

-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학생 측 대표의 등록금 안을 가지고 더 논의하기로 함.

3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8.1.15.(월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정하고,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1. 8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

위원장 정 승 렬

위 원 김 인 준

위 원 이 호 선

위 원 이 승 현

위 원 김 남 균

위 원 원 윤 성

위 원 김 태 호